

하.	한방치료
----	------

[한방치료료 지급기준]

항목	분류번호	단위	금액(원)	적용기간	추가서류
첩약	버1	1일	20,000		한약처방확인서 (공단양식)
탕전료	버2	1첩	670		
환약(환, 포, 캡슐)	-	1일	20,000		
왕뜸치료	-	1회	15,000		
추나요법	-	1회	16,000	~2020.06.29.	
약침술	하1	1회	12,000		
한방물리요법 (저주파·중주파치료 등)	하2	1회	10,000		
혈맥어혈검사	버-3	1회	25,500	2022.01.01.~	

[한방치료료 지급기준 (급여산정 특례)]

항목	분류번호	단위	금액(원)	적용기간	추가서류
약침술	하1	1회	16,000		

- ① 한방치료비용 및 한방검사료는 행위진료료 가산특례(요양기관 종별가산율)를 적용하지 않고 산정하며, 한약은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처방·조제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.
- ② 한약 치료기간은 입원 기간인 경우는 전체를 인정하고, 외래 진료기간인 경우에는 60일 범위에서 인정하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③ 혈맥어혈검사는 뇌혈관·심혈관질환 관련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총 2회를 인정하되,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④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6조의2(급여산정에 대한 특례)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이 한방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경우, 급여산정 특례항목 진료비에 대하여는 해당 수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. <2024. 3. 25.개정>